

IV 지적사항 조치

1 보조사업 내용검토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<주의>

< 지적사항 >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보조금의 교부 결정) 및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4조(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)에 따르면, 보조금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 내용, 사업추진 방향, 수행일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용도 외 사용금지)에 따르면,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8조 제④항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「지방계약 법령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○○○과에서는 ㉠㉠㉠협회의 “2021년 ○○○○사업”과 ●●●의 “2021년 ●●●● 사업”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실제 사업기간(홍보 및 준비기간, 교육기간, 취업 알선기간 등)의 적정성 검토 없이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, 교육기간 외에 상담일지, 근무일지 등 활동사항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음. 또한 “2021년 ●●●● 사업”의 보조금 과다 집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적정으로 처리하였음.



- □□□과에서는 “2021년 〇〇〇〇사업 ”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이 있음에도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고,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자부담금 지출내역에 대한 시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음.

< 조치사항 >

- 보조금관리기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자부담예치 확인 및 지출내역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 바라며,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직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

3 **보조금 교부 전 사전확인 및 정산검사 미실시** < 신분상 주의 >

< 지적사항 >

-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10조(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)에 의하면,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(계좌)을 별도 개설하거나, 법인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(또는 계좌번호 지정서)을 제출하여야 함.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2조(정산검사)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


- **과**에서는 “2021년 **사업**”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이 있음에도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고, 보조금통장과 자부담통장을 구분하여 개설하였지만, 지출은 2개의 통장을 혼용(자부담비를 보조금통장을 통해 사용)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정산검사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.

< 조치사항 >

- 보조금관리기준 등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확인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,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직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

4 **보조사업 자부담 부당 사용 및 정산 검사 부적절** < 주의 >

< 지적사항 >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9조(용도 외 사용 금지), 제21조(실적보고), 제22조(정산검사)에 의하면,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,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,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-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에 의하면, 비소모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음.



- △△△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'2021년 ▲▲▲▲ 사업', '2021 ◆◆◆◆사업'으로 지급된 보조금으로 각각 ○○○○, □□□□ 등 물품을 구입하여 목적 외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정산 검사 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적정 처리 함.

< 조치사항 >

- 보조금 관리기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,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직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

